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3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백혜련・유동수・박상혁

이수진비 · 용혜인 · 기동민

김민기 • 이원욱 • 송영길

조오섭 • 박홍근 • 이재정

고용인 • 권인숙 • 맹성규

박 정・박용진・양이원영

의원(18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, 2020. 2. 4. 개정된 「형사소송법」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,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,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.

이에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 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6제3항 후단). 법률 제 호

#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6제3항 후단 중 "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"를 "범죄사실의 요지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6(긴급출국금지) ①・②	제4조의6(긴급출국금지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	③
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	
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	
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	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검사의</u>	<u>범죄사</u>
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	<u>실의 요지</u>
<u>지</u> ,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	
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	
첨부하여야 한다.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